

「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19일

영 광 군



1. 조 례 명 :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

2. 제정이유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는 영광군협의회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운영·사무 처리 등, 사무 지원 및 준용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인력 등 지원, 공공시설의 이용, 포상(안 제5조~제7조)

4. 제정 조례(안) : 붙임

5. 입법예고기간 : 2022. 8. 19. ~ 9. 8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) 57036 /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
전화) 061-350-5817 / FAX) 061-350-5592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 가능

7. 기 타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(전화 : 061-350-581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광군이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광군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 · 사무 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영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광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 지원 및 준용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

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「영광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